안성 영무예다음 임차인 모집공고[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 본 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공급신청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람.
▣ 본 공고문의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급신청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이며, 임대의무기간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10년임.
▣ 본 주택의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은 2023.03.24(금)이며, 이는 공급신청 자격조건(공급신청자의 나이, 국적 등)의 판단 기준일이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신청불가)만 공급 신청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청약통장 여부,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100% 추첨제를 적용하여 공급함.
▣ 각 주택형별 배정물량의 50%는 해당 주택건설권역(안성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전국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함.
▣ 견본주택 개관은 2023.03.24(금)이며, 운영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입니다. (오픈 및 폐관 시간은 당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청약 신청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반드시 임차인 모집공고문의 신청 일자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당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에 의거 임차인모집 승인 대상 및 전산관리지정기관의 당첨자 관리 의무대상이 아니며, 당첨자 추첨 및 동 · 호수 배정은 임대인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임.
▣ 당해 임대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이며, 59㎡형은 세대별 80,000,000원, 74㎡형은 세대별 100,000,000원, 84㎡형은 세대별 100,000,000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주택건설업체에 대출되며, 분양 전환시 입주자에게 대환됨.
▣ 해당 기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원이 사용검사 전까지 사업부지에 근저당 설정(우리은행, 101,856,000,000원)이 되며, 사용검사 이후는 사업부지 및 건물보존등기 후에 우선 설정됨.
▣ 분양 전환시 입주자에게 대환되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기간은 20년(1년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율은 연2.15~3.0% (2023년 03월 현재, 변동 가능)임.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보증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입이 선행되어야 하며, 보증료는 임대사업자와 입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보증수수료 납부방법 등)에서 규정한 비율로 분담함.
상기 임대보증금은 준공후 임대기간동안 다음에 정한 바에 의하여 보증에 가입하여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로부터 1년(매년 갱신)
보증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금액		
보증료	보증기관의 보증요율에 의함	부담주체	임대인 75%, 임차인 25%(매년 보증수수료를 재산정)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함.
▣ 향후 기금의 취급기관과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하는 기관등이 당해 주택의 부동산에 설정 및 신탁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임차인은 동의하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서는 1년을 기준으로 보증하며, 재가입시 보증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보증금액 및 보증수수료가 증감할 수 있음. 사용검사 이후 주택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한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관련법령 및 관계기관의 기준에 따르기로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음.
▣ 입주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사업주체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 등은 위약금으로 공제되며, 입주 후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
▣ 관리주체가 양도 및 전대확인, 건물점검, 수리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당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기준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음.
▣ 당해 주택은 주택형 구분 없이 1인 1건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함.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함.

I 공급내역 및 공급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12 규정에 의거 경기도 안성시청 주택과 – 10630(2023.03.24)로 임차인 공급 신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안성시 신소현동 86-1번지 일원(안성시 당왕지구 2BL)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 2층 ~ 지상 28층, 10개동 총 99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 분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세대수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포함)	합 계	세대별 대지지분	입주 예정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 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59.9928	276	59.9928	20.7309	80.7237	39.0062	119.7299	35.9486	2026년 10월 예정
	74.9909	234	74.9909	24.9338	99.9247	48.7578	148.6825	44.6416	
	84.9807A	270	84.9807	27.8429	112.8236	55.2530	168.0766	50.4646	
	84.6040B	124	84.6040	28.6616	113.2656	55.0080	168.2736	50.5237	
	113.1891	90	113.1891	30.7161	143.9052	73.5936	217.4988	65.3035	
	141.6591	3	141.6591	45.1231	186.7822	92.1043	278.8865	83.7350	

- 2009. 4.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임.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공급면적을 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기계 · 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인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임을 상호 정산하지 않음.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각 해당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 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소유권보존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권 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 등기는 별도로 이행함.)

▣ 주택형별 타입 표기 안내

구분	전용면적별 타입 표기 방식					
타입	59	74	84		113	141
			84A	84B		
주택형(전용면적기준)	59.9928	74.9909	84.9807	84.6040	113.1891	141.6591

II 임대료 내역

▣ 표준형 임대료

[단위 : 원]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층별 구분	공급 세대수	임대보증금	계약금(10%)		중도금(49%)				잔금(41%)	월임대료
				1차 (계약시)	2차 (2023.05.03)	1차 (2023.09.30)	2차 (2024.06.30)	3차 (2025.03.30)	4차 (2025.12.30)	입주시	
59	전층	276	205,000,000	10,000,000	10,500,000	26,650,000	26,650,000	26,650,000	20,500,000	84,050,000	195,000
74		234	235,000,000	10,000,000	13,500,000	30,550,000	30,550,000	30,550,000	23,500,000	96,350,000	313,000
84A		270	265,000,000	10,000,000	16,500,000	34,450,000	34,450,000	34,450,000	26,500,000	108,650,000	352,000
84B		124	265,000,000	10,000,000	16,500,000	34,450,000	34,450,000	34,450,000	26,500,000	108,650,000	352,000

▣ 전환형 임대료

[단위 : 원]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층별 구분	공급 세대수	임대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 (계약시)	2차 (2023.05.03)	1차 (2023.09.30)	2차 (2024.06.30)	3차 (2025.03.30)	4차 (2025.12.30)	입주시
59	1층	7	233,000,000	10,000,000	10,500,000	30,290,000	30,290,000	30,290,000	23,300,000	98,330,000
	2층	7	238,000,000	10,000,000	10,500,000	30,940,000	30,940,000	30,940,000	23,800,000	100,880,000
	3층	12	245,000,000	10,000,000	10,500,000	31,850,000	31,850,000	31,850,000	24,500,000	104,450,000
	4층 이상	250	256,000,000	10,000,000	10,500,000	33,280,000	33,280,000	33,280,000	25,600,000	110,060,000
74	1층	10	289,000,000	10,000,000	13,500,000	37,570,000	37,570,000	37,570,000	28,900,000	123,890,000
	2층	10	296,000,000	10,000,000	13,500,000	38,480,000	38,480,000	38,480,000	29,600,000	127,460,000
	3층	12	305,000,000	10,000,000	13,500,000	39,650,000	39,650,000	39,650,000	30,500,000	132,050,000
	4층 이상	202	318,000,000	10,000,000	13,500,000	41,340,000	41,340,000	41,340,000	31,800,000	138,680,000
84A	1층	10	326,000,000	10,000,000	16,500,000	42,380,000	42,380,000	42,380,000	32,600,000	139,760,000
	2층	10	333,000,000	10,000,000	16,500,000	43,290,000	43,290,000	43,290,000	33,300,000	143,330,000
	3층	10	344,000,000	10,000,000	16,500,000	44,720,000	44,720,000	44,720,000	34,400,000	148,940,000
	4층 이상	240	358,000,000	10,000,000	16,500,000	46,540,000	46,540,000	46,540,000	35,800,000	156,080,000
84B	3층	5	344,000,000	10,000,000	16,500,000	44,720,000	44,720,000	44,720,000	34,400,000	148,940,000
	4층 이상	119	358,000,000	10,000,000	16,500,000	46,540,000	46,540,000	46,540,000	35,800,000	156,080,000
113	1층	3	443,000,000	10,000,000	34,300,000	57,590,000	57,590,000	57,590,000	44,300,000	181,630,000
	2층	3	453,000,000	10,000,000	35,300,000	58,890,000	58,890,000	58,890,000	45,300,000	185,730,000
	3층	4	466,000,000	10,000,000	36,600,000	60,580,000	60,580,000	60,580,000	46,600,000	191,060,000
	4층 이상	80	485,000,000	10,000,000	38,500,000	63,050,000	63,050,000	63,050,000	48,500,000	198,850,000
141	최상층	3	620,000,000	10,000,000	52,000,000	80,600,000	80,600,000	80,600,000	62,000,000	254,200,000

- 상기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임대인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임대보증금은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보증금 산정기준과 무관하며, 분양전환 당시 분양가격 및 방법은 임대인이 결정하여 시행함.
-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 전 1회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고, 최초 계약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입주개시후 1년이 경과될 때마다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은 변경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대출금 등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등 선순위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습니다. 다만, 임시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임대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지정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상기 임대조건은 발코니 확장이 포함된 금액임.

III 일반공급 청약신청 안내 및 유의사항

▣ 일반공급 신청자격

구 분	자격요건
일반공급	•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2023.03.24.)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청약신청 불가) ※ 청약통장 가입여부, 주택소유 여부, 자산보유액 및 소득,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 ※ 타입구분 없이 1인1건에 한하여 청약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청약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 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 신청시(청약 신청분) 각 주택형별 배정물량의 50%는 해당 주택건설권역(안성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전국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함. ※ 우선공급 청약 당첨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3.03.24.)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안성시 거주자가 아닐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 불가 • 본인 및 세대원 개별 청약신청은 가능하며, 이 주택 계약 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함. • 100% 추첨제를 적용하여 공급함.

▣ 일반공급 신청일정 및 장소

주택형	신청일시	신청장소	청약완료
일반공급	2023.03.29.(수) ~ 2023.03.30.(목) 10:00 ~ 16:00	안성 영무예다음 홈페이지(http://안성영무예다음.com)	당사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 본인 인증이 완료된 1인1건 청약신청만 유효하며, 본인인증 불가시 청약불가함.

▣ 홈페이지 청약 안내

구 분	청약신청 절차안내
이용방법 및 절차	• 안성 영무예다음 홈페이지 접속 (http://안성영무예다음.com) → 청약신청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본인인증 →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청약신청사항 입력 → 청약완료
청약접수 확인방법	• 안성 영무예다음 홈페이지 접속 (http://안성영무예다음.com) → 청약내역확인

▣ 유의사항

- 청약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 신청자격 착오(중복청약 등)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임차권 또는 부동산(계약하신 동 · 호수)을 담보로 전세권, 저당권, 질권설정 등 기타 담보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며 계약해지 사유가 됨.
- 정당계약일 종료 후 미계약분 또는 미달세대가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임의방식으로 공급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으로 문의 바람.

IV 당첨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신청 방법
일반공급	•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당첨자 선정 및 동 · 호수를 무작위로 배정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1항에 의거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 공급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정함에 따라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의 청약신청, 임차인 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사업주체가 정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함. • 1인당 1건 청약을 원칙으로 1인당 2건 이상 중복청약 할 경우 청약자격 및 당첨사실은 무효처리 됨.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안내

구 분	당첨자 발표 및 동 · 호수 발표	계약 체결
일반공급	2023.03.31.(금) 10:00 이후 안성 영무예다음 홈페이지 (http://안성영무예다음.com)	일시 : 2023.04.03.(월)~ 2023.04.04.(화), 2일간 / 10:00~16:00 장소 : 안성 영무예다음 견본주택 ☎ 031)671-7700

- 당첨자 추첨 및 발표 시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청약접수는 지정된 접수일자에만 가능함을 유의하시어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 후 신청접수 하시기 바라며, 해당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으므로 발생되는 책임과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동 · 호수 배정은 전산 추첨방식으로 결정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정당계약기간 이후 발생하는 잔여세대는 임대인이 임의방식으로 공급함.

VI 계약체결 등

▣ 임대보증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비고
임대보증금 납부계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1005-204-450062	㈜솔리체	※ 입금예시 101동904호 홍길동 –> 1-904 홍길동

- 당사 견본주택에서는 현금수납을 하지 않으며, 무통장 입금시 동 · 호수 및 계약자(청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어 입금하시기 바람.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어떠한 임대보증금 납부 방법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가 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무통장 또는 온라인으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임대인은 계약금 2차 및 중도금 약정일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지정된 일자에 매월 임대료를 입금하시기 바라며, 매월 임대인은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됨.
-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람.(무통장 입금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납부일이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단,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함.
- 잔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율을 적용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 이 경우 연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함.(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됨.)
- 연체료 납부 시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음.

▣ 계약체결시 구비사항

구 분	적 용
본인 계약시 (배우자 포함)	• 임대계약서 (당사 견본주택 비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용도 : 공동주택 계약용), 인감도장 • 본인확인 : 신분증 • 배우자 대리계약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 주민등록등본 등(배우자관계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임대계약금(지정계좌 납부 무통장입금표)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하여 제출 – 임대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공동주택 계약 위임용) – 임대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위임양식은 계약체결 장소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기준일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 발급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VII 옵션품목

▣ 무상제공품목

구분	설치위치	비고
시스템 에어컨	거실+주방+침실1 (3실)	113타입, 141타입 한정

▣ 유상옵션품목

- 시스템 에어컨(제조사 : LG전자)

주택형	선택안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	잔금	모델명	비고
				계약시(10%)	입주시(90%)		
59	2실	거실+침실1	3,300,000	330,000	2,970,000	RPUQ0252S2R(실외기) RNW0230C2SP(침실1) RNW0520C2SP(거실)	
	4실	거실+침실1,2,3	5,700,000	570,000	5,130,000	RPUQ0402S2R(실외기) RNW0200C2SP(침실2,3) RNW0230C2SP(침실1) RNW0520C2SP(거실)	
74	2실	거실+침실1	3,400,000	340,000	3,060,000	RPUQ0302S2R(실외기) RNW0230C2SP(침실1) RNW0720C2SP(거실)	
	4실	거실+침실1,2,3	6,000,000	600,000	5,400,000	RPUQ0503S2R(실외기) RNW0200C2SP(침실2,3) RNW0230C2SP(침실1) RNW0720C2SP(거실)	
84A,B	2실	거실+침실1	3,600,000	360,000	3,240,000	RPUQ0302S2R(실외기) RNW0230C2SP(침실1) RNW0720C2SP(거실)	
	4실	거실+침실1,2,3	6,300,000	630,000	5,670,000	RPUQ0503S2R(실외기) RNW0200C2SP(침실2,3) RNW0230C2SP(침실1) RNW0720C2SP(거실)	
113	2실 (추가)	침실2,3	2,450,000	245,000	2,205,000	RPUQ0603S2R(실외기) RNW0230C2SP(침실2,3)	
141	3실 (추가)	침실2,3,4	4,050,000	405,000	3,645,000	RPUQ0252S2R(실외기) RNW0320C2SP(침실2) RNW0200C2SP(침실3) RNW0230C2SP(침실4)	

- 유상옵션비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유상옵션비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804-437070	㈜솔리체

※ 추가선택품목(옵션)에 대해서는 매년 10%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후, 정산처리 됨.

- 113타입, 141타입에 한하여 거실, 침실1, 주방 시스템 에어컨(3실)을 무상제공함.
- 시스템에어컨은 "임대인"이 동의하는 품목 및 조건에 한하여 "임차인"이 본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계약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되는 추가 설치 품목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아파트를 명도 할 경우 아파트와 함께 설치상태로 "임대인"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추가 설치품목의 시설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매년 감가상각한 후 잔여금액 이내에서 만 인정하기로 하고, "임대인"이 동의한 추가설치품목 이외 "임차인"이 임의로 설치한 시설과 손상한 부분이 있는 경우는 "임차인"은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않을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기로 하고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추가 설치 품목의 비용은 제외되며 추가설치비를 이유로 분양전환 산정가격의 감액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임대인"이 제공하는 서비스품목은 무상서비스기간 이후부터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보수하여 사용하기로 함.
- 시스템에어컨은 임대차계약과 별도 계약 품목으로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이며, 계약 및 시공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 후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공사 이행착수 이후에는 신청, 변경 및 해지가 불가하고, 추가설치품목 공사의 이행착수 전 계약해지시 총 판매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임대사업자에게 귀속되며, 원상회복 또는 변경공사를 위한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시스템에어컨에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높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람.
- 시스템에어컨 설치 및 사용시 응축수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시스템에어컨은 분양시점에 당 주택의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된 품목으로써 향후 입주시기의 판매가격인하 및 제품연식변경, 성능개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외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타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시스템 에어컨을 위한 천장 냉매배관 및 천정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 에어컨, 주방가전제품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점을 지정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 · 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각 실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는 방의 냉방부하를 만족하는 용량으로 가변형 벽체를 확장할 경우에는 실면적이 증가하여 에어컨 용량이 부족할 수 있음.
- 에어컨 옵션 설치안에 따라 실외기 용량이 상이하므로, 추후에 실내기만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함.
-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인 냉매배관(거실, 안방 각 1개소)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시설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설비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임. •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타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사항 옵션계약이 불가함.
- 상기 시스템 에어컨 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시 매립 냉매배관은 거실, 안방에 각 1개소 기본 설치됨.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 에어컨은 난방 기능이 없음.
- 추가 설치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전 견본주택 및 CG등을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람.

VIII 기타사항

▣ 보증금의 회수와 임대보증금의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됨.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거 임대보증금보증의 대상이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우선 가입하고, "임차인"은 보증수수료의 25%를 "임대인"이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함.(다만,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대상액은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 이후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 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

▣ 계약자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알선 예정이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 등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 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임대보증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지정일의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일정은 별도 고지 예정임.
- 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입주예정일 : 2026년 10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하여야 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연체료, 월임대료 등이 부과됨.

▣ 분양전환

- 분양전환 대상 임차인의 자격요건 및 분양가격은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분양전환을 실시할 시 감정평가 후 임대인이 정한 분양가격에 동의하며, 임대인이 정한 자격요건에 맞는 최종 거주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에 대한 우선 선택 자격을 부여함.
- 장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것은 관련법에 근거가 없어 우선변제권 등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될 수 있음.

▣ 임차권 양도승인 관련안내

- 본 임대주택은 대체 임차인에게 임차권의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임대인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대인이 지정한 날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으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IX 유의사항

▣ 일반 공통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카탈로그 등 홍보물,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청약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유물, 유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 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본 아파트 공사는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하며,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대해 임차인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안성시 및 그 외 지역의 타사 또는 임대인의 다른 임대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시설, 조경 및 임대조건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 · 조경의 설치 및 교체(변경), 임대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시설 설치 요구 시 실제 공사비는 개별부담 하기로 함.
- 정식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성(「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본 건에 대하여 추가 요청을 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될 수 없으며, 일괄확장으로 시공됨.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동 · 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관련법상 내실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가스정압시설, 주유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냄새유발시설) 등 주위 환경과 개발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인쇄물, 판촉물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임대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부대복리시설 운영방식 결정, 운용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서 주관하며 임차인은 이를 따라야 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은 관리주체에 입주전(입주청소 시)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함.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임차인은 입주시 보존등기와 국민주택기금 설정등기등 준공 후 관련 등기 절차가 완료된 후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입주 후 등기 관련업무 처리의 지연에 따라 전입신고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만약 위 등기 업무처리 전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세대원 전출처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당해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세대별 임대계약 체결 내용과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임차인은 동의함.
- 당해 주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발코니 부분 일부에 보일러가 설치됨.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 · 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의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 할 예정임.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퇴거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임차인 모집 시 모형 및 임대 유인물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 · 호수는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된 것으로 향후 안성시의 행정방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실 등은 설치공간만 제공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 내 관리사무소, 독서실, 회의실 등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각종 홍보물상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모형에 표현된 연결녹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구조와 형태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함.
- 관련 법규 및 입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관리사무소, 휘트니스 공간 등)이 시공되며, 이에 따라 이와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주동 저층부 외벽마감은 석재 마감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람.
- 단위세대 내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구조계획 본 공사 시 법적 기준에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외기실 및 대피공간 도어 및 손잡이는 본 공사 시 사양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은 하향식 대피시설로 설치되어 있으며,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함.
- 현관 외 공용부분은 확장하여 전유공간화(전실확장)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 하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일반분양시설인 근린생활시설 형태(평면, 입면, 재료 등)의 변경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간 대지경계가 없는 공유토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임차인이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인허가 또는 공사 진행 중 현장여건 등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 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이 임차인 모집 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임대홍보물의 계획과 달라 질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주차 경사로)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및 대지 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 겨우 외관선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음.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사용검사 시 공동주택 이름의 우리말 표기운동에 따라 아파트 명칭을 고유지명이나 지역특성의 우리말 이름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홍보물

- 당해 주택의 구조 및 마감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인 및 시공사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함.)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및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 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후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과 관련한 사항은 모형물과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람. • 본 견본주택은 59형, 74형, 84A형, 113형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부 계단 및 엘리베이터 홀, 승강기의 용량,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함.
- 견본주택 내에는 임대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임대가 포함 품목만 설치됨.
- 견본주택 내 건립 세대, 세대 모형,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 등에 표현된 가구, 소품, 운동기구, 디스플레이 용품등은 임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레벨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홍보된 주민공동시설 및 이미지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위한 표현으로 본 공사시 위치 및 장소 사용용도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내에 시공(전시)되어 있지 않은 평면에 대해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임대 안내책자를 통해 계약 전 구조 및 마감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시 견본주택 내에 시공(전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의 해지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부가구(신발장, 주방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바닥, 천장, 벽체)은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마감 내용은 차이가 있음.
- 본 공사 시 주동 일부 세대는 기단부 마감 및 상층부 몰딩계획에 따라 창호 크기가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나, 본 공사 시 아파트 세대 창호의 크기 및 세부사양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94호)"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타입이라 하더라도 단재배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달리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람.
- 견본 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 주택에 설치된 위생도기, 수전류, 악세사리, 환기디퓨져, 환기유니트, 바닥배수구, 온도조절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결될 수 있음
- 견본 주택에 설치된 타입이라도 아파트의 배치 및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 주택내 단지모형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모형으로 향후 아파트 내,외관 색채 조경 기타 시설물의 디자인 및 색상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 주택에 설치 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쿨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견본 주택 소방시설로,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견본 주택 미 건립세대에 대하여서는 견본주택 건립세대와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 카탈로그를 확인하여야 함.
-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 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 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비포함 사항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 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텐,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시공에서 제외됨.
- 견본 주택에 설치된 가전은 전시용품으로 실제 가전제품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입주시 발코니의 면적, 출입문의 규격, 냉장고장의 크기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어야 함.
- 견본 주택에 설치된 아트월 타일, 화장실, 주방 벽타일 등은 실제 시공시 줄눈의 간격 및 문양의 패턴 등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방문 후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외부여건

- 본 사업부지 개발계획은 관계기간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경계선 외부의 도로 및 옹벽 등의 구조물은 실시계획단계로 관련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외곽의 건축 옹벽, 토목 옹벽, 보강토 옹벽, 돌쌓기벽(조경석 쌓기 포함) 등은 그 위치 및 혀태는 준공 접수 및 인 허가 과정 또는 현장 주변여건(도로현황, 레벨현황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임대사업자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사업자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을 안성시와 체결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거나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모형물,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 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 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임차인 공급 안내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사업부지 주변의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 유발시설, 주변 개발 등 주위환경에서 대해서 공급신청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임차인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 사업지의 서측과 인접하여 어린이 공원(예정)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인 · 허가 과정이나 현장여건 등에 따라 각 부지와의 연결동선을 비롯한 조경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당 사업지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비룡초등학교이며, 중학생 통학학군은 안성중학군(안성중, 안성여중, 비룡중, 안청중, 명륜여중)으로 기존 학교에 배치 가능함. 단, 안성시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부여건

-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함.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재활용 분리시설 및 자전거 거치대는 단지배치 기준상 최적에 위치에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인접세대에는 사용자의 동선 및 사용방식에 따라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및 위치 변동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단지의 주차장은 지반 형태에 따라 데크 주차장(104동, 105동, 106동, 107동 하부), 지하1층 주차장(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09동 하부), 지하2층 주차장(101동, 102동, 103동, 108동, 109동, 110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동별 주차 대수 및 연결통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주차대수의 평균대수 이므로 각동과 인접된 주차공간이 평균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 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 주차공간 확보 요청을 할 수 없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하 설비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 · 후면에 설치되어 있음.
- 고층 또는 일부세대의 경우 입주 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함.
- 주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음. • 단지 주 출입구에 위치한 저층부 세대는 단지로 출입하는 차량에 의해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음. • 단지 내 · 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도로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인허가 과정 중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부에는 자전거보관소 및 옥외 천창, DA, 옥외계단실 등의 시설물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계약전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배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 및 형태는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일부 동은 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권 확보에 불리할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
- 각 동별 필로티 층은 상이 함으로 계약전 반드시 동배치 및 분양카탈로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입주 후 일부세대에서 도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부대복리시설, D/A(기계실, 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TOP Light, 상가 등의 단지시설물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출입구, 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단지내 상가, 주차출입구 등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접세대 및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각동 옥상부 및 단지내부에 통신사 중계기등 유해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인접세대는 이를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 주차장은 출입구는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지상을 통하여 진입이 가능하며, 2개의 진입로가 설치되어 있음.

▣ 환경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사생활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주 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지하 주차장 진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문주, 식재 등 단지 내 각종 시설물 등과 인접한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현관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일부 동에 근접하게 설치되어 있어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다른 동에서 이용시 불편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급배기구, D/A, 재활용분리수거장(쓰레기 분리수거함),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 인접 세대에는 냄새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지붕 옥탑층 측벽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 안테나, 피뢰침, 환기용 벤틸레이터, TV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일부동 옥상(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에 태양광 모듈이 설치됨에 따라 세대 내 빛 반사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각 동마다 용량 및 크기가 상이할 수 있음.) 본 아파트 계약체결 이후 주변 단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방음벽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외 도로(단지 주변 계획도로 및 지하 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보행자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 동별 일부 라인은 일조 및 채광 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각 동별 배치계획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 같은 사항을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있는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 등의 시설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음.
- 코아 내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각동별 지하 출입구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및 개수는 단지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 시기와 생산 여건에 따라 자재 품절, 품귀, 생산 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 및 관련 도면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조대리석, 타일, 마루, 디자인판넬의 경우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베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복도장 등 수납공간의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로 확장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공급신청 및 계약 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외 공용부분은 확장하여 전유 공간화(전실 확장)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死)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건조기 병렬 배치 시 창호 개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일러 유지 · 보수 점검을 위해 세탁기와 건조기를 탈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단위세대 내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 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등의 제품사양은 동질 및 동급의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타일(욕실, 발코니, 거실 아트월 등)의 나누기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의 싱크대에 설치되는 수전 및 배수구 등의 위치는 사용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 되어질 수 있습니다. • 주방 싱크볼의 크기는 전용면적 타입에 따라 크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 붙박이장 · 주방가구 · 욕실장 · 욕조 등)가 설치되어 있는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은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 · 신발장의 하부에는 열전달로 인한 뒤틀림,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욕실, 발코니, 다용도실 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 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장고는 거실 기준 2.3m이며, 욕실과 실외기실, 발코니, 다용도실 등 발코니 부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결로 방지를 위한 단열재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법, 개폐창의 크기, 칼라, 재료, 사양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 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현장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의 폭, 재질, 개폐 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침실 등 난방공간에 직접 면한 실외기실 설치공간 도어는 결로 및 단열 등의 하자를 고려하여 동등 이상의 자재로 변경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내 · 외부 창호의 유리사양 중 Low-E 유리가 설치되는 경우, 설치 위치는 결로 및 단열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변경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및 공용부 창호의 크기, 열림창의 크기, 두께, 사양, 개폐 범위, 창호 프레임 등은 시공시 선정되는 제품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외부 석재 마감구간의 단위세대 및 코아부에 설치 창호는 마감 시공을 위해 일부 창호의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발코니(침실1 발코니, 주방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 실외기실, 대피공간) 천장고는 단열재 설치로 견본주택 대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 · 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 일반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 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발코니(침실1 발코니, 주방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의 천장에는 각종 배수용 배관이나 전원 공급용 전선 및 콘센트, 전열교환기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배수 드레인, 선홈통, 각종 배관, 가스관 등은 시공여건을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시 점검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가스 배관이 지나가는 주방가구 깊이는 일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후드 상부장에는 주방자동소화장치가 가스,전기 겸용으로 설치되며, 후드 상부장 일부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배치되는 가구 및 기타 액세서리는 실시공시 좌 · 우 타입 세대 배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빨래 건조대의 건조봉은 타입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외기실, 대피공간 금속문의 문짝, 프레임, 손잡이, 힌지 등의 형태 · 색상 ·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온수분배기는 주방 싱크 하부장에 설치되며, 싱크 하부장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대기전력 차단장치(대기전력 스위치 연동 콘센트 등) 및 LED 조명기구 적용 비율은 인 · 허가 사항에 따라 적용 예정입니다.
- 단위세대 내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변형 구조 변경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침실1 발코니에는 우수, 배수 입상 배관이 노출로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배기는 당해층 직배기 형식으로 세대 외벽에 배기구가 설치됩니다. • 양변기는 관련법에 의거 절수형 양변기를 적용하여 일반 양변기에 비해 배출 성능이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 방식으로 개별 가스 보일러가 설치되며,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고, 본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보일러 연도의 결로로 인해 낙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절기 결로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의 경우 비난방공간입니다.(욕조, 샤워부스, 양변기, 세면기 하부 공간은 바닥 난방 시공 제외.)
- 세대내 실내환기는 전열교환 환기방식으로 기계환기 설비가 적용되어 있으며, 실외기실 천정에 전열교환기 및 덕트가 노출 설치되고,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 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 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침실용 및 거실에서 통합 제어됩니다.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는 가스배관 및 가스 미터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가전 등)은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추가선택품목 평면 선택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월패드, 배선기구, 스위치, 조명기구,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등의 위치 및 제조사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침실, 다용도실 등의 문 뒷벽 등의 노출된 장소에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이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조명기구는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위치 및 색온도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월패드, 네트워크 스위치 내의 화면디자인 및 배치, 외부디자인은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주방 TV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수기, 전자렌지, 전기밥솥 등의 배치 시 간섭될 수도 있습니다.

▣ 외부환경디자인

- 단지내 조경, 동출입구, 상가 및 각종시설물,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개선 및 시공 등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임차인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임차인모집 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주동 외부 색채계획은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및 실시공 시 외관개선 등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 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부대동 외부 입면 색상 및 재질은 모델하우스 모형 기준으로 변경 예정이며, 최종 허가시 약간의 변경은 있을 수 있음.
- 홍보물 및 CG, 모형상 지붕형태는 건축, 경관 심의 조건 및 구조적 안정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옥상 구조물은 구조 및 시공상의 여건에 따라 일부 보강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주출입구 문주는 시공사의 고유 디자인을 적용,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모형으로 디자인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최종 준공시 약간의 변경은 있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주거 서비스

- 지반 상태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기초 형식 및 파일내력, 단지외부 옹벽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당사가 시공하지 않는 단지 이외의 시설은 모형에 정확히 표현할 수 없으며, 단지 내 실외기, DA 등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상에 표현된 주변환경, 부지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동표시, 동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단지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 시설, 사인물, 안내시설물, 동 출입구 및 캐노피, 필로티, 평입면계획, 외부난간 형태 높이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입주시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및 공용부의 창호 사양, 위치, 크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있을 수 있음. •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 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음.
- 각 동별 주차장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공간에 회차 공간이 없어 이용이 불편할 수 있음.
- 지하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정화조 등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차장 바닥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해당 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음.
-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 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경계에는 한전 인입을 위한 전주 및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미관이 저하될 수 있음. 또한 한전 인입 정책 및 현장여건에 따라 각 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주민운동시설, 쓰레기 집적소, 자전거 보관소, 설비환기구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보행통로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근 세대는 계약 카탈로그, 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 기관 심의 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 방향에 면한 세대의 경우에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음. • 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속도는 동 최고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로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사전검사를 통한 공사용 운행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 하에 있으며 시공사에 하자 제기를 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의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등을 위하여 평, 입, 단면, 창호 재질 및 색상, 창호 사양, 열리는 창의 크기, 유리 사양, 위치 및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의 구성 실 배치형태 내부 구조 실외기실 배기탑 모양 및 디자인은 건축 계획과 마감재 및 집기는 인 허가 과정이나 실시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시설 사용, 운영방식 결정, 운영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서 주관하며 임차인은 이를 따라야 하고, 단지 내 각종 시설물의 유지 관리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보육시설 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은 임대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로부터 권리를 부여 받은 자가 운영함) • 주요 장비 구동과 관련한 전기 가스요금 및 유지 관리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등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집기 및 마감재는 변동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 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일부 부대복리시설 경우 지하층 등에 위치함에 따라 자연 채광 및 자연 환기에 불리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상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 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및 대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체결일부터 입주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음.
- 분양 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평면, 입면, 재료 등)의 변경에 대해 임대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간 대지경계가 없는 공유토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근린생활시설용 지상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주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임차인과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주거서비스의 제공 및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한 임대사업자와 서비스업체간의 양해각서 협약서 등의 체결 변경 해제에 관하여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2동 하부에는 작은도서관, 관리사무실, 근로자 휴게실, 109동 하부에는 돌봄센터, 104동~108동 사이에는 어린이집,경로당 주민공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향후 사용자 특성에 따라 인근 동에 소음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또한 각 부대시설의 거리에 따라 동 거리가 있는 거주자는 이동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10동 전면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의 업종 및 사용용도에 따라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저층부 세대는 일부 조망권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단지형태는 지반층 여건에 따라 101동, 110동 / 102동, 103동, 108동, 109동 / 104동, 105동, 106동, 107동으로 데크형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각 단차별 통행은 외부 계단 및 EV, 외부 램프 통행로를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함.
- 101동 단지여건
  - 1라인, 4라인 저층부는 2개층 필로티로 구성되어 있음. – 전면부에 부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전조등 빛의 산란등의 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4라인, 5라인 전면에 지하 주차장 통행 램프가 설치되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전조등 빛의 산란등의 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2동 단지여건
  - 하부에 작은도서관, 관리사무실, 근로자휴게실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배치되어 있어 사용자의 성향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의 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라인, 4라인 저층부는 2개층 필로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 이동을 위한 외부 계단이 설치되어 있음.
  - 후면에 주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전조등 빛의 산란등의 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후면에 어린이 차량 대기를 위한 회차 공간 및 맘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분진, 전조등 빛의 산란등의 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4라인, 5라인 전면에 지하 주차장 통행 램프 및 단지내 회전 교차로가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전조등 빛의 산란등의 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3동 단지여건
  - 1라인, 4라인 저층부는 2개층 필로티로 구성되어 있음. – 전면에 주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전조등 빛의 산란등의 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전면에 지하 주차장 통행 램프 및 단지내 회전 교차로가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분진,전조등 빛의 산란등의 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4라인, 5라인 전면에 데크 주차장 진,출입구가 있어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전조등 빛의 산란등의 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4동 단지여건
  - 4라인 저층부는 2개층 필로티로 구성되어 있음. – 후면에 커뮤니티 진입광장이 있어 사용자의 이동에 따른 소음,진동,분진등의 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최상층에 주민카페가 설치되어 있어 주민카페 진입을 위한 별도에 E/V에 설치되며, 주민카페 이용을 위한 사용자의 성향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의 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전면에 어린이집, 경로당이 설치되어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 소음, 진동 등의 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5동 단지여건
  - 2라인, 4라인 저층부는 2개층 필로티로 구성되어 있음. – 1라인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됨.
  - 3라인, 4라인 전면에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 소음, 진동, 분진등 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6동 단지여건
  - 1라인 저층부는 2개층 필로티로 구성되어 있음. – 1라인 2라인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됨.
  - 전면에 어린이 놀이터, 후면에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 소음, 진동, 분진등 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7동 단지여건
  - 1라인, 2라인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됨. – 측면에 어린이집, 경로당이 설치되어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 소음, 진동 등의 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8동 단지여건
  - 1라인 저층부에 2개층 필로티로 구성되어 있음. – 후면에 어린이집, 경로당이 설치되어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 소음, 진동 등의 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후면에 데크 주차장 진,출입구가 있어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전조등 빛의 산란등의 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9동 단지여건
  - 1라인 저층부에 2개층 필로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 이동을 위한 외부 계단이 설치되어 있음. – 하부에 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 소음, 진동, 분진등 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후면에 지하 주차장 통행 램프 및 단지내 회전 교차로가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전조등 빛의 산란등의 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전면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 소음, 진동, 분진등 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전면에 지하 주차장 통행 램프가 설치되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전조등 빛의 산란등의 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10동 단지여건
  - 1라인 저층부는 2개층 필로티로 구성되어 있음. – 전면부에 부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전조등 빛의 산란등의 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전면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의 업종 및 사용용도에 따라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저층부 세대는 일부 조망권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측면에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 소음, 진동, 분진 등 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회사명	감리금액(원, 부가세 포함)	비고
건축감리	㈜천일건축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581,844,100원	
전기감리	㈜선한이엔지	903,329,690원	
소방감리	대원포비스(주)	885,506,212원	
통신감리	㈜건창기술단	143,000,000원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등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 · 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성능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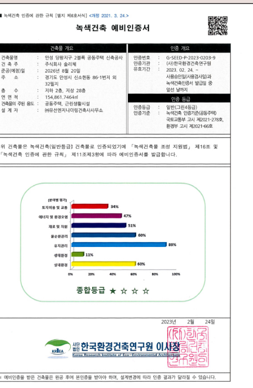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3. 24.>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 안성 당왕지구 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건축주 : 주식회사 솔리체
준공(예정)일 : 2026년 8월 20일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신소현동 86-1번지 외 32필지
층수 : 지하 2층, 지상 28층
연면적 : 154,861.7464㎡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인증 개요
인증번호 : G-SEED-P-2023-0203-9
인증기관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2023. 02. 24. ~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까지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그린4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공동주택)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78호, 환경부 고시 제2021-66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일반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종합등급 ★☆☆☆

2023년 2월 24일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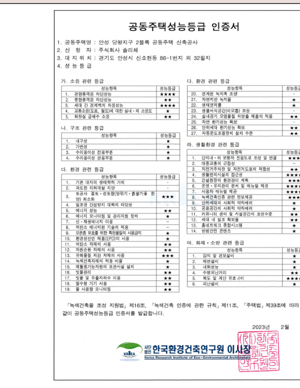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안성 당왕지구 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신청자 : 주식회사 솔리체
3. 대지위치 : 경기도 안성시 신소현동 86-1번지 외 32필지
4. 성능등급

가. 소음 관련 등급
나. 구조 관련 등급
다. 환경 관련 등급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마. 화재 · 소방 관련 등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3년 2월 24일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안성시 안성 영무예다음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82023-704-0020000 호	₩ 187,558,030,000 원 (일천팔백칠십오억오천팔백삼만원정)	보증서 발급일부터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사용승인)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동별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다만,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위해 보증서가 발급된 세대의 보증기간 시작일은 민간임대주택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부터로 함

▣ 제1장 보증채무의 내용

-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계약 포함, 이하 같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함.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 이하 같음) 이후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라 공급촉진지구에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사의 이행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함.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이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말함.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나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 또는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이전에 그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말함. 이하 같습니다.
【공급 신고증명서】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에서 임대사업자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하고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증명서를 말함. 이하 같습니다.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시 · 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 및 고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함. 이하 같습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함. 이하 같습니다.
【임대이행】 보증사고시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하여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것을 말함.

- 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임대보증금 등의 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는 공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보증서 발급일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미리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이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공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함.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종료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함.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 비용 · 그 밖의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 이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1.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2.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게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5. 주채무자가 책임질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6.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② 공사가 제1조 제2호에 따라 임대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 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제10호 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함. 다만,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은 그렇지 않음.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감재 공사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한 공사부위를 말함. 이하 같습니다.

▣ 제2장 보증채무의 청구와 이행절차

- 제4조(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1.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② "보증사고일"이란 공사가 제1항의 사유로 보증채권자에게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 사업포기 등 관련 문서 접수일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임대차계약자)는 사업주체(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임대사업자)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사용검사전)임대보증금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HUG-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사업주체 변경의 동의】 임차인은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임대인 및 시공회사

구분	임대사업자		시공사
상호	주식회사 솔리체	주식회사 더와이	주식회사 더와이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1908호 (역삼동, 아남타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1147번길 7, 303호 (농성동)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1147번길 7, 303호 (농성동)
법인등록번호	110111-6507458	170111-0677552	170111-0677552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신건지동 38
▣ 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 http://안성영무예다음.com
▣ 임대문의 : 견본주택 ☎ 031)671-7700

※ 본 임차인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 및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문의 031)671-7700

시행 (주)솔리체 · (주)더와이 시공 (주)더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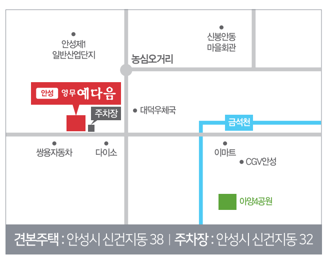

견본주택 : 안성시 신건지동 38 | 주차장 : 안성시 신건지동 32

※ 견본주택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인근 주차장 이용 부탁드립니다.